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90

발의연월일: 2020. 11. 16.

발 의 자:양정숙·강민정·용혜인

이용호 · 김철민 · 김수흥

이장섭 · 민형배 · 이용빈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는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 공개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의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내에서의 다자협력 등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자력 안전은 개별 국가의 책임을 넘어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을, 1987년에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위 각 조약에 대하여 1990. 7. 9. 발효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제8차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전문가를 의장단으로 배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선도국으로서 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 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5조의2(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의 분석·평가 등) ① 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비상사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제2항에 따른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한다.
 - ④ 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제2항에 따른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의 구성·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3호 중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을 "방사선환경조사, 제10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감시·평가"를 "감시·평가 및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105조의2(국외 방사능 비상사 태의 분석·평가 등) ① 위원회 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 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 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 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제2항에 따른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 단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때 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
	파선이 이루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 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저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 12. (생략)
-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u>방사</u> 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 <u>에 따른</u>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u>감시·평가</u>

14. · 15. (생략) ② ~ ⑤ (생략)

④ 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u>-</u>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하	
당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	_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u>-</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
결과 공개, 제2항에 따른 국외	
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의 구성	•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_
령령으로 정한다.	_
 네111조(권한의 위탁) ①	_
· · · · · · · · · · · · · · · · · · ·	_
	_
	_
	_
	_
	_
 1. ~ 12. (현행과 같음)	
13방시	L
	_
선환경조사, 제105조제1항에	L
<u> 따른</u>	-
<u>감시·평가 및 제105</u> 조의	_
2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14.・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